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824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제 출 일 : 2025년 5월 26일
- 회 부 일 : 2025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이 현저한 저연차 직원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시장표창 추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 제1호).
- 나. 표창장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(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).
- 다.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(안 제4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.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.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.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.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.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4. 3. ~ 4. 23.) 결과: 의견없음.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‘본 개정안’)은 표창권자 관련 규정을 재구성하고(안 제4조), 표창장 수여대상의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(안 제7조), 표창장 수여대상(시·자치구 설립 공기업 및 소속기관) 규정을 정비하고(안 제7조), 기타 자구를 수정하려는(안 제18조) 것임.

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〉

조 문	주 요 내 용
제4조(표창권자)	- 표창권자별로 규정(시장, 시 소속기관의 장)
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	- 최소 근무연수(3년 이상) 제한 규정 삭제 - 시·자치구 공기업 및 소속기관 규정 문구 정비
제18조(시행세칙)	- 자구표현 정비(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)

가. 표창권자 규정 내용 정비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표창권자 규정방식을 현행 표창 종류별로 규정하던 것을 표창권자별로 규정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표창권자)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<u>자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<u>표창장, 상장 :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</u> 2. <u>감사장 : 시장, 시 소속기관</u>	제4조(표창권자) ----- ----- <u>사람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</u> 은 다음 각 호와 ---. 1.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2. <u>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</u>

의 장	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조 제목(표창권자)에 부합하는 규정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관적으로 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규정 해석의 혼란 소지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, 상장, 감사장이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음.

[표창 분류]

구 분	수여 대상	수여 사유
표창장	① 시·자치구 공무원 및 시·자치구가 설립한 공기업 임직원 (이하 공무원 등)	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
	②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자치구 소속기관	우수한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
	③ 개인 및 단체	지역사회 발전, 사회질서 확립,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현저히 기여함
	④ 퇴직자(공무원, 투출기관 직원 등) ※ 정년·명예퇴직·순직 등	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
상장	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개인 및 단체	교육훈련성적 등 우수한 평가성적
		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
감사장	개인 및 단체	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		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

[최근 5년간 시장표창 수여내역(소방 포함)]

(작성기준 : 2025.05.30.)

연도	합계			공무원 표창			시민 표창		
	표창장	상장	감사장	표창장	상장	감사장	표창장	상장	감사장
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	(소방)
합 계	40,646	15,104	479	21,557	1,799	76	19,089	13,305	403
	2,404	800	1	1,752	343	1	652	457	0
2021	9,468	2,477	72	5,359	438	12	4,109	2,039	60
	493	81	0	338	31	0	155	50	0
2022	9,162	3,942	123	4,709	375	23	4,453	3,567	100
	511	154	0	402	53	0	109	101	0
2023	9,603	3,928	111	5,080	379	30	4,523	3,549	81
	628	210	0	460	54	0	168	156	0
2024	10,464	4,194	151	5,515	467	11	4,949	3,727	140
	673	221	1	481	109	1	192	112	0
2025.5.	1,949	563	22	894	140	0	1,055	423	22
	99	134	0	71	96	0	28	38	0

나. 표창장 수여대상 정비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표창장 수여대상 기준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(안 제7조제1호), 표창장 수여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(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)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	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----- ----- -----.
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,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.	1. ----- ----- ----- 공무원 및 시·자치구----- ----- 임 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<단서 삭제>
2.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	2. ----- ----- 우수한 시 소속기관, 자 치구, 자치구 소속기관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
- 표창장 수여대상의 필수 근무 기간(3년 이상)의 삭제로 공적이 현저한 신규 및 저연차 직원까지 표창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표창대상(시·자치구 설립 공기업 및 소속기관 임직원)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,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- 다만, 표창장 수여대상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, 표창장 수여가 방만하게 이루어져 표창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시·자치구 공기업 및 소속기관 규정 문구 변경사항]

< 개정 전 >	< 개정 후 >
시·자치구 및 <u>시가 설립한 공기업</u>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	시·자치구 공무원 및 <u>시·자치구가 설립한 공기업</u>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
우수한 <u>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</u>	우수한 <u>시 소속기관, 자치구, 자치구 소속기관</u>

※ 행정국은 시·자치구 공기업 및 소속기관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,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
[표창장 수여대상(현행)]

- (개인) 서울시·자치구 공무원 및 서울시·자치구 투출기관 임직원*, 기타 개인
- (단체) 서울시 소속기관(실·본부·국, 부서, 팀 등), 자치구 및 자치구 소속기관(실·본부·국, 부서, 팀 등)*, 기타 단체

*예1)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

예2) 성동구, 성동구 보건소

-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다. 기타 자구표현 정비(안 제18조)

- 안 제18조는 조례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규정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시행세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18조(시행세칙)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

전문위원	정찬일	입법조사관	이태기
------	-----	-------	-----